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('26.9.2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: 권대영)는 9월 2일 제15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금양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한편,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이재훈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최진혁 (02-3145-7723)
	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국	책임자	국 장	최창중 (02-3145-7860)
		담당자	팀 장	이두형 (02-3145-7864)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(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6.9.2. 의결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금양 결산기 : 2022.12.31. 2023.12.31. 2024.3.31. 2024.6.30. 2024.9.30.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: 발포제 등 화학 제품 제조업	【회사】 ①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 계상 (별도·연결 : '22년 103억원) -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·발급하는 등의 방법 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함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산정 오류 (별도 : '23년 776.5억원 '24.1분기 776.5억원, '24.2분기 935.5억원 '24년 3분기 172.2억원 연결 : '23년 618.2억원 '24.1분기 710.8억원, '24.2분기 752.5억원 '24년 3분기 732.2억원) - 회사는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 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③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(별도 : '23년 763.3억원, '24.1분기 763.3억원, '24.2분기 763.3억원 연결 : '23년 741.7억원, '24.1분기 741.7억원, '24.2분기 741.7억원) - 회사는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징후를 발견하고,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④ 외부감사 방해 - '22년 외부감사시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증빙을 제시하고, 재고를 회사가 거래하는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함 ⑤ 감리시 허위자료 제출 - 감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, 재고는 정상적으로 인도되었으며, 감사인 등의 재고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함	회 사 : - 과징금 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감사인지정 3년 - 대표이사 외 3인 해임 (면직)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- 前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(면직)권고 상당 - 검찰고발 (회사, 대표이사, 前담당 임원) - 검찰통보 (前영업담당임원 외 2인) - 시정요구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[감사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선진회계법인	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 ① 매출 관련 감사절차 부실 - 감사인은 (주)◇◇◇◇◇◇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, 매출 관련 통제 테스트 및 세부테스트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함 ②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부실 - 감사인은 (주)◇◇◇◇◇◇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, 매출원가 관련 통제 테스트 및 세부테스트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함	선진회계법인 : - 과징금 ※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 - (주)◇◇◇◇◇◇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 : - (주)◇◇◇◇◇◇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) ·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 공인회계사 1인 : 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2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국)